

장학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지도자 양성과 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장학 기금을 보존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관리)

장학 기금은 총회 유지재단이사회가 관리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다음 장학금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적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
2. 한신대학생 장학금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4. 해외 유학 장학금
5. 동문 장학금

제4조 (자격)

1.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

교역자 자녀 가운데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역자라 함은 은퇴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 재학생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는 한신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격에 관한 규정은 한신대학이 작성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교육자나 일반 교인으로서 교회 선교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해외유학 장학금

해외유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학 후 귀국하여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외유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기관 혹은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학업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다.

5. 동문 장학금

한신대학교 이외 타 대학 신학과 재학생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학 금액)

장학 금액은 총회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선발 절차)

1.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학금(밀알장학금)은 유지재단이사회가 관리하며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의 규정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하되 매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교 교수회는 신학생 장학금을 받을 적격 후보자를 선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지도자 교육 장학금 청원서 접수와 선발 결정은 본 이사회가 직접 관리한다.

4. 해외 유학 장학금

해외 유학 장학생의 선발 의뢰가 있을 때 본 이사회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관계 교회나 단체에 추천한다.

5. 동문 장학금

신학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으로서 동문 및 해당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 (기한 및 기타)

1. 해외 유학 장학금 외의 각종 장학금의 액수와 인원수는 총회가 정한다.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본부는 총회에 매년 장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준한다.
5. 본 세칙의 개정은 총회 규칙 개정에 따른다.

제8조 (개정)

이 관리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관리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3년 제4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